

1. 개정이유

불명확한 군무원의 서기 및 검찰수사관 전형 지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서기 전형 방법의 예외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 가. 법무병과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의 서기 및 검찰수사관 전형 지원 자격을 법무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자로 함(안 제2조)
- 나. 사문화된 서기 전형의 예외를 삭제(안 제3조)
- 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수사직렬로 채용된 군무원에 대한 서기 전형 지원 및 결정에 관한 특례(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부사관

제2조제1항제2호(중전의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중전의 라목) 중 “한미연합사령부”를 “한미연합 군사령부”로, “참모부서”를 “부서”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부사관 또는 군무원”을 “군무원”으로 한다.

가. 군사법원

다. 각 군 검찰단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수사직렬

로 채용된 제2조 제1항 제2호의 군무원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형 지원
이 가능하고, 서기전형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조 및 제4조의 전형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및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① 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u><신 설></u> 1. 다음 각 목의 기관,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u>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부사관 또는 군무원</u> <u>가. 고등군사법원</u> <u>나. (생략)</u> <u><신 설></u> <u>다. (생략)</u> <u>라.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 · 기관 또는 각 군 소속 부대의 법무 관련 참모부서</u> <u>2. 3. (생략)</u> ② (생략)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① ----- ----- ----- ----- ----- ----- ----. <u>1. 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부사관</u> <u>2. -----</u> <u>----- 군무원</u> <u>가. 군사법원</u> <u>나. (현행과 같음)</u> <u>다. 각 군 검찰단</u> <u>라. (현행 다목과 같음)</u> <u>마. ----- 한미연합</u> <u>군사령부-----</u> ----- ----- <u>부서</u> <u>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u>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험에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합격점수 이상을 받아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검찰수사관 전형방법의 예에 따라 서기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9조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일 것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일 것

3. 제9조제1항의 배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일 것

<신 설>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의2(경력경쟁채용 군무원 특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수사직렬로 채용된 제2조제1항제2호의 군무원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형지원이 가능하고,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u>고등군사법원</u>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서기전형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조 및 제4조의 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및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군사법원</u> ----- ----- ----- -----.
---	--